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3년 제공계획(기준정보)

2023. 7.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별 세부내용	5
<input type="checkbox"/> 기준정보 유의사항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법령	6
<input type="checkbox"/> 사업별 세부 기준정보	7
1) 【01081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5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0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2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15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17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19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1
8) 【131113】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꿈을 jobja' 24
9) 【131213】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26
10)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28
11)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30
12)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33
13)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35
14)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37
15)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39
16) 【99221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41
17) 【992713】 전북청년 농촌치유 프로그램_자연스러운청년힐링스테이(신규) 43

2023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군산시)

1. 사업개요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계	17개 사업					
1	【01081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시장형)	임상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부안
			만18세 이하			
			문제행동위험군아동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시군 (도개발)
			만6세이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클래식 및 국악 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개발)
			만7세~만18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아동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건강상태점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서비스 (A형 : 수중운동 B형 : 마루운동(유산소운동))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단일등급 A수중: 108 B마루: 60	단일등급 A수중: 12 B마루: 1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만65세 이상			
			-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시군 (전국사업)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 근위축증, 척수장애인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 요법, 체형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등급: 151,200 2등급: 134,400 3등급: 117,600	1등급: 16,800 2등급: 33,600 3등급: 50,40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만 60세이상			
			지체,뇌병변 장애 또는 근골격 순환신경계질환자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0	2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시군개발)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8	【131113】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꿈을 jobja'	비전형성,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24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익산
9	【1312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리더십,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부모상담 등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비전형성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 단, 임실군·순창군만 5세 ~ 만16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비만 및 혀약체질 아동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 수립과 맞춤운동 지도 및 영양관리 서비스	- 만5세~만18세 경도비만이상 아동,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이하 아동, 인바디 BMI 또는 체지방량 과체중 또는 저체중 표시된자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주, 군산, 정읍, 남원
11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의 치매예방, 정서지원, 문화여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144	1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12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서비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1등급 : 164 2등급 : 144	16	군산, 진안, 무주, 장수
13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 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7세~만18세 장애인청소년, 척추 측만 청소년 및 정서적 문제행동 청소년	1등급: 180 2등급: 160	1등급: 20 2등급: 40	군산, 익산, 정읍, 김제
14	【221513】 글로벌미인드형성서비스	다문화교육 및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형성 및 리더십 증진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당해연도 세대 내 1명 신청 가능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15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 예방,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 만35세 이상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예방이 필요한 성인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12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80	전주, 군산, 의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16	【99221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혀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만18-39세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 이상, 18.5미만	216	24	전시군 (도 개발)
17 (신규)	【992713】 전북청년 농촌치유 프로그램_자연스러운 청년힐링스테이(신규) * 2023.6.26. 기준 제공기관 없음	농촌치유지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 심리적 건강성 증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 만18세~만39세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	1등급:180 2등급:160 3등급:140 4등급:120 5등급:100	1등급:20 2등급:40 3등급:60 4등급:80 5등급:100	전시군 (도 개발)

2. 사업별 세부내용

◀ 1. 2023년 기준정보 유의사항 ▶

- 2022년에 선정되어 2023년에 종결하는 이용자는 2022년도 기준정보가 적용되며, 2023년에 신규 이용자로 선정되거나 재판정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는 2023년 기준정보를 적용([하반기 변경사항은 하반기 이용자부터 적용](#))
- 재판정 이용 신청자는 신규 이용 신청자와 동일한 신청서류와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를 추가하여 제출함(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는 중간보고서도 추가 제출 필수)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 자격기준 보다 국가자격증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 2.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법령 ▶

제공인력 자격	근거 법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법」제7조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안마사	「의료법」 제82조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제12조
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고등교육법」 제2조, 제35조, 제50조, 제54조, 제58조
전통문화예술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초등학교정교사,전문상담교사,특수학교정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제17조

① 【01081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만18세 이하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에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각 지역 병원</td><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r> <td>-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td><td>-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td></tr> <tr> <td>-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p>【임상심리평가결과지】</p> <p>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p> </td></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td></tr> <tr> <td>2. 욕구판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td><td></td></tr> <tr> <td>• 재판정 대상자</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td></tr> </tbody> </table>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p>【임상심리평가결과지】</p> <p>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p>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2. 욕구판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p>【임상심리평가결과지】</p> <p>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p>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2. 욕구판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자격기준은 일치해야 함 <슈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이후, 학사는 실무경력 5년 또는 석사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경계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p>*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시장형 월 20만원, 서비스 제공자 슈퍼바이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62,000원</td><td>18,000원 (시장형 38,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44,000원</td><td>36,000원 (시장형 56,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td><td>126,000원</td><td>54,000원 (시장형 74,000원)</td></tr> </tbody> </table> <p>* 단, 시장형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p>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시장형 7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 											
기본 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td><td>주 1회 월 4회</td><td>50분</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주 1회 월 4회	50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자격기준은 일치해야 함 <슈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이후, 학사는 실무경력 5년 또는 석사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경계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p>*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시장형 월 20만원, 서비스 제공자 슈퍼바이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62,000원</td><td>18,000원 (시장형 38,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44,000원</td><td>36,000원 (시장형 56,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td><td>126,000원</td><td>54,000원 (시장형 74,000원)</td></tr> </tbody> </table> <p>* 단, 시장형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p>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시장형 7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 											
기본 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td><td>주 1회 월 4회</td><td>50분</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p>③ 미술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 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 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p>④ 음악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의 내·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 실행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p>⑤ 심리상담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제공과 중재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상담 유형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⑦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 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아래 [별표1] 참고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 집단규모에 따른 회당 서비스 시간

- ① 1:1 50분(기본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 ② 1:2 70분(기본프로그램 50분 + 부모상담 20분)
- ③ 1:3 90분(기본프로그램 60분 + 부모상담 30분)

[별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 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 심리평가 결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 SELSI, U-TAP(APAC), P-FA,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및 관리해야 함
-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 활용(단, 만 3세 이하의 유아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 제외 가능)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 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 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 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 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 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Rosenberg) : 효과성 관리 보고,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또는 언어프로그램 대상자는 언어 발달척도(Pres, Selsi, Revt), 조음척도(UTAP)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인력 1명당 2~3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소집단 프로그램(1:2~1:3) 허용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②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전 시군(도개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빈곤·다문화·조손·한 부모·대체 가정)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td><td>- 건강검진 검사결과</td></tr> <tr> <td>-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td></tr> <tr> <td>-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 II, K-CDR 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td><td>-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td></tr> <tr> <td>-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p>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건강검진 검사결과	-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 II, K-CDR 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	-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	-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건강검진 검사결과												
-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 II, K-CDR 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	-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												
-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 일치해야 함(예시-언어발달영역 : 언어재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 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 또는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body> </tabl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서비스</td><td>발달기초영역</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td></tr> <tr> <td>언어발달영역</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td></tr> <tr> <td>초기 인지영역</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td></tr> <tr> <td>정서·사회성영역</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td></tr> <tr> <td>부가 서비스</td><td colspan="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발달기초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언어발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잠재적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 언어, 초기인지, 정서 및 행동 관련 검사 실시 - 2단계 :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조기중재서비스 실시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 5단계 :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발달기초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언어발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해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로 향상도(정상범위 내) 측정검사 실시 ※ 이와 별도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효과성 입증 제출용 K-CDR-R 향상도 제출 (이용자 전체)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 조절(회당 40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원하거나, 기관장의 소견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획 시 기록 (1:1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록)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③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시군개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 ~ 만18세 아동 욕구기준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td></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p>우선순위 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악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통문화예술(악기)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문화예술교육사(전통악기) 					
	<p>*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및 서비스 제공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 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p>※ 시군의 승인(공문)을 득한 이용자에게만 월4회(주1회, 1일 연속 이용)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rowspan="2">1. 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 </td><td rowspan="3">주 2회 월 8회</td><td>60분</td></tr> <tr> <td>120분</td></tr> <tr> <td>2. 정서순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 </td><td>1:1 40분 1:6 60분</td></tr> <tr> <td>3. 일반 연주회 관람</td><td>반기별 1회</td><td rowspan="4">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td></tr> <tr> <td>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td>연 1회</td></tr> <tr> <td>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td><td>제공기간 중</td></tr> <tr> <td>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td><td>연 1건 이상</td></tr> <tr> <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 	주 2회 월 8회	60분	12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 	1:1 40분 1:6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연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	연 1건 이상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 	주 2회 월 8회	60분																								
			12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 		1:1 40분 1:6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연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	연 1건 이상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및 국악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음악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강점난점 척도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A형 클래식악기) 3명 이내, (B형 전통국악기)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인력 1명당 6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④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맞춤형 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td><td>- 제출서류 없음</td></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td><td>-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td></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욕구기준	제출서류						
-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고창, 임실, 남원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서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p>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p> <p>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p>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③ 수중운동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수중운동지도 실무경력 2년 이상 ④ 마루운동은 에어로빅, 요가 등 실내운동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수중운동 : 월 12만원, 마루운동(유산소운동) : 월 7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수중운동</th> <th colspan="2">마루운동(유산소운동)</th> </tr> <tr> <th>정부</th> <th>본인</th> <th>정부</th> <th>본인</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가격</td> <td>108,000원(90%)</td> <td>12,000원(10%)</td> <td>60,000원(90%)</td> <td>10,000원(10%)</td> </tr> <tr> <td></td> <td colspan="2" rowspan="3">120,000원</td> <td colspan="2" rowspan="3">7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수중운동		마루운동(유산소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08,000원(90%)	12,000원(10%)	60,000원(90%)	10,000원(10%)		120,000원		70,000원
구분	수중운동		마루운동(유산소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08,000원(90%)	12,000원(10%)	60,000원(90%)	10,000원(10%)															
	120,000원		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완주, 진안, 고창, 임실, 남원 거주 만성질환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p>건강상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td> <td>연 3회</td> <td></td> </tr> <tr> <td></td> <td> <p>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 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주 2회 월 8회</td> <td>90분</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p>건강상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p>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 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p>건강상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p>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 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90분																
<p>※ 1회 90분은 준비 및 정리 운동, 샤워 및 환복 시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증진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25명 이내 이용자 가능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5 【07011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td><td>- 제출서류 없음</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td><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td><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해당년도 초기상담기록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p>※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08,000원</td> <td>12,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96,000원</td> <td>24,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초과)</td> <td>84,000원</td> <td>36,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 2명 이상 있는 가구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 → 2등급, 2등급 → 1등급)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3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36,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7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이용자 선정년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제한 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호자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초기상담기록지로 갈음 • 집단규모 : 해당 없음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불가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⑥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및 욕구기준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td><td> <p>(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p> </td></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p>(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p>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p>(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재판정 신청자거나 가구원이 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td> <td>151,200원</td> <td>16,800원</td> </tr> <tr> <td>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td> <td>134,400원</td> <td>33,600원</td> </tr> <tr> <td>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td> <td>117,600원</td> <td>50,4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51,200원	16,8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17,6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51,200원	16,8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17,600원	50,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head> <tbody> <tr> <td>노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td><td rowspan="5">주 1회 월 4회</td><td rowspan="5">60분</td></tr> <tr> <td>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td></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종료 시 효과성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도 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거동 가능 정도에 따라 기관방문과 재가방문 선택하여 제공 가능 (초기상담 시 재가방문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의 질병 및 신체상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정신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없음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이하 택1)</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코드 확인서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 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경기준 참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td></tr> </tbody> </table> <p><Beck척도에 따른 서비스 신청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고등학생</th><th>대학생</th><th>성 인</th><th>평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6~19점</td><td>14~17점</td><td>9~11점</td><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td><td></td></tr> <tr> <td>20~23점</td><td>18~21점</td><td>12~14점</td><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td><td>우선고려</td></tr> <tr> <td>24점 이상</td><td>22점 이상</td><td>15점 이상</td><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td><td></td></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코드 확인서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 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경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코드 확인서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 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경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정신장애인 및 진단코드가 있는 경우만 해당(GAF, Beck척도로는 재판정 신청 불가)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또는 교육 필수 - 제공인력은 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의 개인별 사례관리 양식에 슈퍼비전 내용 기재(상·하반기)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45 785 1436 885">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단일등급</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에 포함하여 재판정 횟수 산정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table border="1" data-bbox="325 1065 1452 1177"> <thead> <tr> <th rowspan="2">이용자 선정년도</th><th colspan="6">연도별 재판정 횟수</th></tr> <tr> <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head> <tbody> <tr> <td>2018년 선정</td><td>서비스 이용</td><td>재판정1회</td><td>재판정2회</td><td>재판정3회</td><td>재판정4회</td><td>재판정5회</td></tr> </tbody> </table>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8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8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특성(증상,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기본 서비스	<table border="1" data-bbox="345 1289 1467 2045"> <thead> <tr> <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td><td>주 1회 월 4회</td><td>60분</td></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주 1회 월 4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주 1회 월 4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부 가 서 비 스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수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월 1회	연 2회 상·하반기
	<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 선택적 제공> 1. 가족교육(집단규모 제한 없음)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수립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 일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측정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 대상로 선정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정신건강의학평가척도(BPRS)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본서비스 중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은 1:5 가능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재가방문+집단활동+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만 기관방문형, 추가확보시설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 시 재가방문형 기준으로 등록하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확보시설 보고 (대중이용시설 제외)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⑧ 【131113】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을 jobja'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3세~만24세 ● 욕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td></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専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98,000원	42,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98,000원	42,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욕구사정과 맞춤형 서비스 설계 통해 청소년 커리어를 높이고, 사회 적응 탄력성 제고 					
	기본서비스	심리검사 및 상담		사전사후		
		비전 프로그램	비전형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성품 리더십 	(1~3개월 차)		
			진로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검사 및 직업탐험 활동 			
		직업교육(4~12개월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리스타, 네일아트, 피부미용, 드론교육, 3D프린터 교육 등 맞춤형 직업교육 		주 1회 월 4회 120분		
	부가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		월 1회		
<p>※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진행 시 재료비 부담이 큰 관계로 공동재료비를 월별 관리함 (네일아트 기관 3:본인 7, 그 외 재료비 기관 5:본인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선정된 대상자 사전검사와 대상자 욕구사정 및 부모 상담 통해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단계 :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 3단계 : 서비스 제공보고서(상담결과 안내문)발송 및 서비스 종결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3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9 【131213】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포함, 임실, 순창은 만5~16세)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김제시의 경우 스마트도시(김제)지역인재육성과 중복지원 불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제출서류 없음 </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p>※ 유아교육학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년도부터 자격기준에서 삭제. 다만 '19. 12. 31.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A형 월 8회, 주 2회/ B형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성 향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체험활동	A형 : 주 2회 월 8회 B형 : 주 1회 월 3회	A형 : 90분 B형 : 9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B형 : 월 1회	B형 : 480분
※ A형 : 주2회/월8회(회당 90분), B형 : 주1회(월3회)+월1회 체험(회당 90분+480분)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0 【160213】 스포츠활동 건강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5세~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의 경우 장애아동 대상자 제외(장애인운동재활 서비스로 연계) ①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② 건강관리 필요한 허약한 아동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제한 : 문체부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관련부서 확인)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인바디 측정지 내 BMI·체지방량에 고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된 자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 인바디 측정지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또는 학교장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22년 7월 이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인바디 측정지 내 BMI·체지방량에 고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 인바디 측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또는 학교장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인바디 측정지 내 BMI·체지방량에 고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 인바디 측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또는 학교장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84,000원	3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주 2회, 월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 본 서 비 스	1. 운동처방 : 대상 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주 2회 월 8회
		2.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3.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측정 검사 	
	부 가 서 비 스	-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방학중) 또는 성과발표 및 대회참가	연 2회 이상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기준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체력증진(PAPS), 자존감 척도(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장애인 및 특수지원 대상 아동) 제공인력 1명당 7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자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1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자 및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노인 우울감 및 인지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욕구기준 : 정서적 지지 및 사회 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맞춤형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단위 거주자 독거노인 부부 단독세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2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전주시 제외)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p>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단위 거주자 독거노인 부부 단독세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단위 거주자 독거노인 부부 단독세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p style="text-align: center;">◀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0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div> <p>1. 이모작프로그램 가. 취업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하는 민간자격 취득과정에 해당되는 강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민간자격증취득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경력 증빙) ○ 민간자격취득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민간자격 취득과정 강사활동을 하는 자(교육기관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 나.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취미 및 자원봉사 교육 해당 민간자격 취득자 ○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해당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회공헌프로그램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p>						

2. 치매예방프로그램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교육학 또는 실버복지, 노인복지학과 등 노인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치매예방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정서지원프로그램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정서재활프로그램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원예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재활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건강관리프로그램
-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운동종목 동일)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신체건강운동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체육 및 운동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레크리에이션 학과 제외)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신체건강운동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5.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이모작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
6.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 관련 특강
- 특강 주제 관련 부모교육 및 특강 경력 자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44,000원	1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자를 서비스별로 그룹핑하여 서비스 제공(단, 집단규모는 준수해야 함)
- 초기상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 결정
- 서비스는 선택형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으로 월4회 주1회 제공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p>〈선택형 프로그램〉</p> <p>※ 선택형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서비스 제공</p> <p>1. 이모작 취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으로 연계 가능한 민간자격 과정 교육 - 동화구연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한지공예지도사, 토탈공예 지도사,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p> <p>※ 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p> <p>2. 이모작 사회공헌 프로그램 : 공연 및 재능기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스 스포츠, 마술,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 - 자서전쓰기,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자교육 등 <p>※ 공연활동 또는 자원봉사활동 연1회 실시</p> <p>3. 치매예방 프로그램 : 소근육, 창작, 손근육, 과거회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운동, NIE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p>4. 정서지원 프로그램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 재활 관련 프로그램 <p>5. 건강관리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운동,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산, 트래킹, 노인 신체건강 관련 운동 종목 및 보건소 방문 등 	주 1회 월 3회	80분
		<p>〈필수프로그램〉</p> <p>6. 문화여가증진 프로그램(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 및 전시회 체험, 관광지 및 유적지 문화 체험, 지역축제 참여 활동 - 기관 자체 공연 및 전시회 활동 <p>*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전용면적 기준 준수</p> <p>** 장소가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인 프로그램은 연 12회 중 연 6회까지만 가능하고 연 6회 이상 외부 프로그램 운영</p>	주 1회 월 1회	120분 이상
	부 가 서 비 스	개별관리	분기별 1회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여가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 ● 집단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2 【190813】 노인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정리정돈, 청소, 방역, 개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욕구기준 :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군의 자체 주거개선 및 잔수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주거관리 서비스 미제공 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실내환경정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미제공 → 잔수리 및 방역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 3, 제출서류 없음 </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2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읍면 거주자만 해당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p>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 3,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 3,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수리 및 청소(방역) 관련 자활기업 경력자 및 재직자 ②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및 청소(방역)사업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자 ③ 건축 및 인테리어(문화재 수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소지자. 단, 도배, 장판 자격증 제외 ④ 주거개선 관련 업체 또는 지자체의 기술교육 수료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 및 방역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1등급 월 18만원, 2등급 월 16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 : 원거리</td><td>164,000원</td><td>16,000원</td></tr> <tr> <td>2등급 : 기본</td><td>144,000원</td><td>16,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 : 기본	144,000원	1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 : 기본	144,000원	16,000원										
<p>※ 1등급 원거리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시군 소재지 3km이상 등), 군산의 경우 선정 후 제공기관과 해당 제공자의 거리가 3km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등급변경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선정 이용자로 ’23년 종료자는 단일등급 → 등급변경 불가 ‘23년 선정 이용자부터 변경등급 적용 <p>※ 군산의 경우 2등급으로 일괄 선정 후 제공기관과의 거리 확인 후 등급변경</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군</th><th>원거리 지역</th></tr> </thead> <tbody> <tr> <td>군산시</td><td>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td></tr> <tr> <td>진안군</td><td>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td></tr> <tr> <td>무주군</td><td>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td></tr> <tr> <td>장수군</td><td>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td></tr> </tbody> </table>			시군	원거리 지역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시군	원거리 지역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주거관리, 실내·외 정리정돈(청소),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타 사업의 주거복지 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60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 비 스</td><td>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정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td><td>주1회, 월4회</td></tr> <tr> <td>부 가 서 비 스</td><td>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td><td>필요시 분기별 1회</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정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부 가 서 비 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시 분기별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정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부 가 서 비 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시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계약, 초기상담, 사전검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해당 가구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종료 및 보고서 작성, 사후 검사(종료 시 이용자 만족도 검사 의무 실시) (타 예산 주거복지 사업 연계 등 부가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안전점검(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사고유형별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안전교육 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연2회) 대상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이용자배상(상해)보험 등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척도, 이용자 만족도(복지부 지침의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13, 14, 15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대비 10% 향상 • 상·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 당 1명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3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 및 ADHD, 인터넷과몰입, 척추측만증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한 정서행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 예방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장애인은 160% 이하), 만7세~만18세 욕구기준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아동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ADHD 증후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 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천서(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td></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만 해당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아동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ADHD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 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천서(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아동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ADHD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 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천서(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승마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말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재활승마지도사(농축산부) 승마관련 민간자격증, 승마경기 지도사 소지자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심리상담 등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p>※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p>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39 248 1425 444">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증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table border="1" data-bbox="355 630 1456 1094"> <thead> <tr> <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 본 서 비 스</td><td>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td><td rowspan="2">주 1회 월 3회</td><td rowspan="2">60분</td></tr> <tr> <td>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td></tr> <tr> <td>집단상담</td><td>월 1회</td><td>60분</td></tr> <tr> <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개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2단계 :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욕구 파악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부모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존감 척도(Rosenberg), 개정판 아동정서불안척도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집단규모 : ① 교감활동, 재활승마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시작 2개월 이후 비장애인:아동청소년 1:3, 장애아동청소년 1:2 ② 집단상담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세부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14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아동 *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7세 미만도 포함 욕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단, 당해연도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만18세 이하)</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 추천사유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명시 2,3. 제출서류 없음 </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 이용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중 면단위 거주자만 해당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기준	제출서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단, 당해연도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만18세 이하)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 추천사유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명시 2,3.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단, 당해연도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만18세 이하)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 추천사유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명시 2,3.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외국어 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의 경우 외국어 교과 전담으로 확인 가능한 자 외국어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결혼이민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인증한 해당 외국어강사 교육 수료생 결혼이민 전 해당국 또는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p>*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62,000원</td><td>18,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44,000원</td><td>36,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26,000원</td><td>54,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1등급 이용자 중 단위 거주자만 가능)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증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맞춤형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 마인드 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마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주 2회 월 6회	A형:60분 (1:2, 90분) B형:90분	
	2.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과 정서 함양 프로그램	월 2회		
부 가 서 비 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다문화 체험전시회 또는 성과향상대회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 2단계 : 해당 가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매월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글로벌 역량증진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A형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형제자매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1:2 가능, 단 회당 서비스 시간 90분 제공) ※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은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기본서비스 B형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③ 부가서비스 – A형과 B형 모두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A형 재가방문형, B형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5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 <td>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td></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욕구기준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23. 1월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이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1년 이상인 자 <p>※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부부소통증진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제공인력도 해당)</p> <p><슈퍼바이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 상담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5년, 박사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으로 학사는 실무경력 5년, 석사는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p>※ 슈퍼바이저를 갖추지 못한 제공기관은 이용자 추천을 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td><td>120,000원</td><td>80,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p>※ 중간평가보고서 작성</p>	주 1회 월 4회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 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PI-2(MMPI-2RF 가능), BDI, STAI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Rog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용자 가능 (필요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단,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 관련 전문 치료가 요구되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에 한해 재가방문형 인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6 【99221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8 ~ 39세 청년층 욕구 기준 :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미만, *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이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미만 또는 체지방률 경도비만이상</td><td>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td></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 없음</td><td></td></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미만 또는 체지방률 경도비만이상	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미만 또는 체지방률 경도비만이상	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 동일해야 함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단일등급</td><td>216,000원</td><td>24,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재판정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216,000원	2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216,000원	2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12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h>주기</th></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td> <p>〈운동 및 건강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td><td>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td></tr> <tr> <td>부가서비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td><td>서비스 기간 중 1회</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평가 ※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 ※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내용	주기	기본서비스	<p>〈운동 및 건강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구분	내용	주기										
기본서비스	<p>〈운동 및 건강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대비 인바디 사후 검사 3% 향상 ● 집단 규모 : 1:3, 1:4(선택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17 【992713】 전북청년 농촌치유 프로그램(신규)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전 시군(도개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건강성 증진, 일상회복을 증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td><td>- 제출서류 없음</td></tr> <tr> <td>1.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가족돌봄청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한부모가구</td><td>- 제출서류 없음(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td></tr> </tbody> </table> <p>※ 제출된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욕구기준	제출서류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	- 제출서류 없음	1.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가족돌봄청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한부모가구	- 제출서류 없음(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욕구기준	제출서류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	- 제출서류 없음						
1.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가족돌봄청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한부모가구	- 제출서류 없음(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농업사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농업 관련 서비스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 <table border="1"> <tbody> <tr> <td>전문자격(국가자격)</td><td>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td></tr> <tr> <td>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td><td>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td></tr> </tbody> </table> <p>** 관련 실무경력 : 치유농업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학교 등에서 농촌·농업 지원을 활용하여 재활·상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체육학, 재활학, 영양학 등 관련 서비스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면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150시간 이상) 수료자 해당 분야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회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회당 이용시간</th><th rowspan="2">회당 가격(원)</th><th rowspan="2">횟수</th><th colspan="2">기타(가격 및 횟수)</th></tr> <tr> <th>2인</th><th>2인 초과 시</th></tr> </thead> <tbody> <tr> <td>3시간</td><td>50,000원</td><td>4회</td><td>100,000원 (월 2회)</td><td>1인당 본인부담금 30,000원 추가 (월 2회)</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td><td>120,000원</td><td>80,000원</td></tr> <tr> <td>5등급(기준중위소득 160% 초과)</td><td>100,000원</td><td>100,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원)	횟수	기타(가격 및 횟수)		2인	2인 초과 시	3시간	50,000원	4회	100,000원 (월 2회)	1인당 본인부담금 30,000원 추가 (월 2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120,000원	8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100,000원	100,000원
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원)				횟수	기타(가격 및 횟수)																									
		2인	2인 초과 시																												
3시간	50,000원	4회	100,000원 (월 2회)	1인당 본인부담금 30,000원 추가 (월 2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120,000원	8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100,000원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회화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큐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족욕, 풍욕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 : 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밀반찬 등 제철음식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td><td>월 4회</td><td>3시간</td></tr> <tr> <td>부가서비스</td><td>활동 포트폴리오</td><td></td><td></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회화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큐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족욕, 풍욕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 : 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밀반찬 등 제철음식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월 4회	3시간	부가서비스	활동 포트폴리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회화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큐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족욕, 풍욕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 : 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밀반찬 등 제철음식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월 4회	3시간																												
부가서비스	활동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사전검사 ②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③ 3단계 : 서비스제공 ④ 4단계 : 사후검사,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아동안전 확보계획 수립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차량,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고립감, 우울척도(통합적한국판 CES-D),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Family Relations Scale-Brief Form) ● 집단규모 : 6~10인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